칼 럼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일부 인간의 다중성은 죄악 중 죄악

실제로는 왜 그렇지 않을까. 입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인종, 지역, 학력, 재력, 외모 등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뭘까.

물론 일시적인 만족감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물거품일 뿐이다.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도취감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

요즘은 단톡방이 유행이다. 그런데 어떤 단체나 시설의 단톡방을 들어가 보면 가관이다. 그곳의 대표 등 힘 있는 자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몇 마디씩 거두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도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다. 사실 높은 찬양을 부르짖는 사람들일수록 밖에서는 그 대상에 대한 험담이 심한 경우가 많다. 앞에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구사하다가도 말이다. 참으로 웃기는 현상 아닌가.

이런 인간의 다중성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속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자신을 터무니없이 칭찬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이 심각해서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사실 그동안 인종차별이 심한 편이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그렇다. 백인계통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도.

최근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면 우리도 그들 나라에 갔을 때 또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잖은가. 참으로 속량들이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피해를 줬는가를. 별로 없다. 우리들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 해왔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대한민국 남성들이면서도 대한민국 사람들과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동남아 등에서 온 여성들 아닌가. 그들은 아이도 많이 낳고 가정적이다. 인구증가 절벽을 그나마 보완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코시안'이라 부른다. 차별적 언어다. 사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이 아닌가. 왜 이래야 되는가. 답답하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작금의 세상에서 무슨 짓들인가. 오죽 심했으면 유엔까지 나섰겠는가.

한국담당인 게이 맥두걸 위원은 이런 말을 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말이다.

위원회는 특히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지,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와 정치인 등의 혐오발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고 한다. 인종차별 선동 확산을 막는데 정부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다. 뭐가 잘났다고 이래야 되는가.

인권은 소중하다. 누구의 인권이든지간에. 나눠줄 수도, 나눠가질 수도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유한자인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차별해서야 되겠는가. 불과 80~90년 밖에 살지 못하면서. 그런 몰지각한 족속들은 이 틀을 똑같이 내국인들에게도 행한다. 가진 자의 갑질, 각종 상처주기, 무시발언 등으로. 오호 통재라.

社 說

공무원 갑질 단죄해야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갑질을 뜻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갑질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성실의무(기타) 위반'에 따른 징계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임을 감안할 때 더 엄정한 수준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징계수위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이다.

아울러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은폐와 무대응의 경우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징계 대상자가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게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담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가 신청하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징계기준 마련으로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정신이 강화됐으면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鳴 울 명
鳳 봉새 봉
在 있을 재
樹 나무 수

鳴鳳在樹

▷뜻: 명군(名君), 성현(聖賢)이 나타나면 봉(鳳)이 운다는 말과 같이 덕망(德望)이 미치는 곳마다 봉(鳳)이 나무 위에서 울 것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가슴압박 응급처치를 숙지하여 생명의 기적을 창조하자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 2,000여회 출동하여 2,100여명(전년대비, 10% 증가) 응급처치하여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였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의 폐쇄는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호기심이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사고이다.

대개 유아나 어린이에게서는 땅콩, 동전, 바둑알, 떡, 사탕 등이 기도 질식 사고를 일으킨다. 자녀들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 상태가 되면 즉시 '하임리히' 응급처치법을 해야 한다.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면 두 손으로 목을 감싸면서 기침을 하거나, 숨을 쌕 쌕 거리고, 심한 경우 얼굴이 파래지거나, 질식하여 의식을 잃는다. '하임리히 응급처치법'은 가슴이나 배에 충격을 가해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다.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의 등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한 손은 주먹을 쥔 채로 두 손을 모아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를 힘껏 밀쳐 올리기를 5회씩 반복한다.

어떤 원인에 의해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경우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환자를 다시 소생시킬 방법이 없다. 특히 산소공급에 민감한 뇌는 3~5분 정도만 심장이 멈춰도 저산소증에 의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받게돼 이후 다시 심장 박동이 회복되더라도 의식회복은 되지 않는 뇌사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심정지가 온 경우 현장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지 않는 한 환자를 소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가 현장에 보급되고, 2012년부터는 법률로서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할 정도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장이 정지되거나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바로 119소방서에 신고하자.

그리고 1세 이하 아기는 한 손으로 머리가 낮게 엎어놓고 등을 '탁탁' 치는 방법으로 이물질을 빼야 한다. 심폐소생술(C.P.R)은 양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고, 눈과 귀로 심장정지 및 무호흡 유무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며, 아무도 없으면 스스로 119소방서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낀 두 손으로 몸과 수직이 되도록 30회 압박하며,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을 완전히 밀착하여, 정상호흡을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 넣는다.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시행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성인기준 5cm 이상 1분에 100회 이상의 속도로 압박한다.

문형근 / 무안119안전센터 진압팀장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 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